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12월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정보통신부장 유영환

◎**법률 제8773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한한다)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별정우체국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저출산 추세는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감소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고 이 같은 저출산 추세의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이나 육아의 책임과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현행법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의 2분의 1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7년12월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정보통신부장 유영환

◎**법률 제8774호**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定義)”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法”을 “법”으로, “用語”를 “용어”로, “定義”를 “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절차·활동 등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品質認證)”을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을 “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品質確保”를 “품질 확보”로, “流通促進을”을 “유통촉진을”로, “品質認證을”을 “품질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을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認證機關을”을 “인증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를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로, “認證받은 製品에”를 “인증받은 제품에”로, “제17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의 優先購買 및 技術개발촉진법 第3조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을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 品質認證의 실시에 관하여”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로, “大統領令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소프트웨어産業 情報의”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 수준·연구동향·시장동향·사업자현황 및 기술인력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2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의 設立)”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振興院에”를 “진흥원에”로, “이 法에서 規定한”을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으로, “民法의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를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제22조의 제목 “(事業代價基準)”을 “(사업대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 國家機關등”을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으로, “契約을”을 “계약을”로, “原價計算業務에 活用할”을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로, “代價基準을”을 “대가기준을”로, “告示하고”를 “고시하고”로, “施行할”을 “시행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價基準은 소프트웨어産業의”를 “제1항에 따른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로, “品質을”을 “품질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소프트웨어事業者의 申告)”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를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로, “機關”을 “기관”으로, “團體”을 “단체”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業務를”을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로, “豫算을”을 “예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또는 團體의 지정 및”을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로, “大統領令으로”를 “정보통신부령으로”로 한다.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共濟組合의”를 “공제조합의”로 하고,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 중 “共濟組合은”을 “공제조합은”으로, “各號”를 “각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소프트웨어開發”을 “소프트웨어개발”로, “技術向上과”를 “기술향상과”로, “資金의 貸與”를 “자금의 대여”로, “投資”를 “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프트웨어開發”을 “소프트웨어개발”로, “技術向上과”를 “기술향상과”로, “資金을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하고자”를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로, “債務에”를 “채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義務履行에”를 “의무이행

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성능보협사업

제38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이유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 중 일부를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반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제20조의2 신설)

-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2)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따른 과업 내용변경의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3)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사업 수행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과업변경에 따른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소프트웨어 제값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제한(법 제20조의3 신설)

- (1) 소프트웨어사업 분야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하도급하는 등의 사례에 따른 계약이행의 부실화나 그 밖의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원칙적으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하되, 발주기관인 공공기관 등이 사업의 품질이나 정보시스템 구축상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함.
- (3)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과도한 하도급에 따른 계약이행의 부실화 그 밖의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을 방지하고, 소프트웨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상생·협력관계를 확립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법 제20조의4 신설)

- (1)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직접적인 규

정이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관이 유리한 하자 보수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수주기업이 과도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수주자·발주자 사이에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도입(법 제23조)

(1)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동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시행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며, 국내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제도 도입(법 제24조의3 신설)

(1)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부실방지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신고 및 경력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2)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변경신고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신고·변경신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이 가능하게 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국내·외 취업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기대됨.

<법제처 제공>